

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원중 의원입니다.

-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
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
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의 ‘문화재’는 재화의 의미로 인식되어왔
고,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한계가 있어, ‘문화재’를 ‘국
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「국가유산기본
법」,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, 「자연유산
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이 24년 5월 17일 시행 예
정입니다.

- 본 개정안은 상위법 제·개정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조례 중
‘문화재’ 등의 용어를 ‘국가유산’ 등의 용어로 일괄 정비하여
국가유산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
시민의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

조례 개정안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